

수 정 안

의안 번호	2590
----------	------

2015. 9. 15.
행정재무위원회

1. 수정이유

구정질문 시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65조의2제2항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일괄질문의 경우는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는 48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함.

3. 참고사항

수정안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.

제65조의2제2항 “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” 를 “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48시간 전까지” 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 신 설 >	<p>제65조의2(구정질문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65조의2(구정질문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늦어도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